

평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평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
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9. 5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개정이유

- 도시계획세 과표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주민 세부담을 완화하고 중앙정부의 부동산정책에 호응하여 행정안전부 표준권고안에 따라 도시계획세세율을 인하하려는 것임

2. 주요골자

- 도시계획세 세율 인하 (안 제97조)
 - 도시계획세 세율을 1,000분의 1.5에서 1,000분의 1.4로 인하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별첨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- 다. 관계부처승인 : 해당 없음
- 라. 입법예고 : 2009. 4. 24 ~ 5. 4(10일간)
「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의거 10일간으로 단축 (주민의 부담 완화사항)
- 마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불임

평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“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,000분의 1.4로 한다.”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기한) 제97조 개정규정은 2009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7조(세율)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<u>1,000분의 1.5</u> 로 한다.	제97조(세율)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<u>1,000분의 1.4</u> 로 한다.

관 계 법 령

□ 지방세법

제237조(세율) ① 도시계획세의 표준세율은 제236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,000분의 1.5로 한다.

② 시장·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도분의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. 이 경우의 세율은 그 가액의 1,000분의 2.3을 초과할 수 없다.